

# 사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4호 2001. 4. 2)

총무위원회  
2001. 5. 4(금)

## 1. 심사경과

- 가. 2001. 4. 2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1. 4. 2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1. 5. 3 제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## 2. 제안설명 요지(환경보호과장 최학림)

### 가. 제안이유

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·징수 항목 및 금액을 개정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(1)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과태료부과기준 및 세부항목이 환경부 훈령으로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함.
- (2) 종전에는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앞으로는 30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을 조정함(안 제2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성호영)

- 동 조례안은 그동안 상위법의 빈번한 개정으로 상위법과 법체계가 맞지 않아 현행 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과태료도 환경부 예규 제208호(2001. 2. 10)에 의해 조정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